

의안번호	2201572
의 퇴 인	김태호의원
회 답 일	2024. 8. 12.
추계번호	24C1834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2조(아동 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등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, 어린이집, 초등학교, 유치원 등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. 이 경우 아동 중 다수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빈번하게 보행하는 도로를 아동보호구역으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(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→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2조(아동 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아동보호구역 지정 의무화(안 제32조)

-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, 어린이집, 초등학교

교, 유치원 등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- 2024년 5월말 기준 전국 아동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39개 시·군·구에 1,746개소의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음
- 또한, 현행법 제32조제3항¹⁾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에는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여야 하는데, 현재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는 17,514대의 영상정보처리가 설치되어 있음

[표 3] 아동보호구역 지정 현황(2024년 5월 기준)

(단위: 개소, 대)

시·도	시·군·구	시설별					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
		계	도시공원 (제1호)	어린이집 (제2호)	초등특수학교 (제3호)	유치원 (제4호)	
서울	4개	241	105	6	125	5	5,061
부산	16개	203	15	50	121	17	2,372
인천	1개	16	0	6	6	4	16
대전	1개	150	66	35	23	26	982
경기	3개	782	7	728	47	0	7,828
강원	3개	47	29	4	14	0	118
전북	4개	101	39	18	28	16	308
전남	2개	50	0	11	37	2	105
경북	1개	24	24	0	0	0	138
경남	4개	132	46	20	65	1	586
합계	39개	1,746	331	878	466	71	17,514

주: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, 세종, 충북, 충남, 제주에는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이 없음

자료: 보건복지부에서 시·도별 취합 후 제출

- 개정안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설치가 의무화되면 경찰 순찰인력의 확대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추가 설치 등이 필요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1) 「아동복지법」 제32조(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)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
-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2023년 기준 도시공원 17,534개소, 어린이집 28,954개소, 초등학교 6,175개소, 유치원 8,441개소 등 61,104개소로 개정안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이 대폭 확대됨
- 이에 따라 의무적인 순찰지역 확대에 의한 경찰의 업무량 증가로 순찰인력의 확대가 필요할 수 있고,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추가로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될 필요가 있음
- 다만, 아동보호구역 설치 의무화에 따른 경찰 순찰인력의 확대 규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추가 설치 기준·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현 시점에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 - 경찰의 업무량 증가로 인한 순찰인력의 증원 여부 및 증원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알기 어려움
 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²⁾는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·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개정안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
 - 개정안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곳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기 설치 여부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기준 등의 정보를 알 수 없음
 - 참고로,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1대당 설치단가는 1,250만원(시설·부대비 950만원, 고정형 CCTV 250만원, 라이선스 50만원)임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2)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(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·관리)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(이하 "공원관리청"이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